

『이비인후과 의사 배상책임 보험 안내』(2021년. 7월~)

1. 상품내용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하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담보내용

- Case A) 단순진료 (도포마취, SPRAY 포함)
- Case B) Case A + 국소마취를 하는 경우
- Case C) Case B + 부분마취를 하는 경우
- Case D) Case C +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 담보내용 해설

- Case A) 환부에 뿌리거나 (SPRAY) 바르는 마취연고 포함
- Case B) 국소마취 : 환부와 주사부위가 같은 마취시술을 하는 경우
- Case C) 부분마취 : 척추마취, 경막외 마취 등 환부와 주사부위가 다른 마취시술을 하는 경우
- Case D)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

(단,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분마취로 인정하는 시술은 Case B 또는 Case C에 해당함)

3. 보상한도액 및 연간보험료

1) 보통약관

(단위 : 원)

| 진료유형 | 담보내용 |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1청구당/연간 총보상한도) | | | |
|--------|--------------------------|------|----------------------|-----------|-----------|-----------|
| | | | 3천만 | 5천만 | 1억 | 2억 |
| Case A | 단순진료 (도포마취, SPRAY 포함) | 2백만 | 392,000 | 462,000 | 650,000 | 868,000 |
| | | 5백만 | 328,000 | 397,000 | 585,000 | 804,000 |
| | | 1천만 | 242,000 | 310,000 | 501,000 | 720,000 |
| Case B | Case A + 국소마취 포함 | 2백만 | 561,000 | 626,000 | 874,000 | 1,202,000 |
| | | 5백만 | 466,000 | 537,000 | 784,000 | 1,108,000 |
| | | 1천만 | 346,000 | 416,000 | 628,000 | 902,000 |
| Case C | Case B + 부분마취 포함 | 2백만 | 1,887,000 | 2,267,000 | 2,999,000 | 3,948,000 |
| | | 5백만 | 1,557,000 | 1,934,000 | 2,672,000 | 3,615,000 |
| | | 1천만 | 1,165,000 | 1,542,000 | 2,278,000 | 3,222,000 |
| Case D | Case C + 전신마취 포함 | 2백만 | 2,648,000 | 3,180,000 | 4,209,000 | 5,535,000 |
| | | 5백만 | 2,185,000 | 2,716,000 | 3,744,000 | 5,075,000 |
| | | 1천만 | 1,634,000 | 2,165,000 | 3,192,000 | 4,520,000 |

2) 특별약관

(단위 : 원)

| 특약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청구당, 의사1인당) | 연간보험료 | 공제금액 |
|----------------------------|-----------------------------|---------|------------|
| 일반시설/경호비용 | 5백만/5백만 | 180,000 | 100,000 |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 합의금 | 5백만원 | 150,000 | - |
| 벌금 | 2천만원 | 45,000 | - |
| 형사방어비용 | 5백만원 | 70,000 | - |
|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 사망후유장애 1억원 재물손해 1억원 | 58,000 | - |
| 휴업손해 | 5십만원/1일, 최대 15일 | 170,000 | - |
| 초빙의/마취의 | 5천만원(3천만원) | 288,000 | 10,000,000 |

4. 보험조건

-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통약관
- 2)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 3) 일반시설배상책임 담보조항 (일반시설만 담보 - 주차장, 생산물 제외)
- 4) 소급담보일자 : 최초 보험 가입일
- 5)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 6)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
- 8) 벌금 담보 추가 특별약관
- 9) 형사방어비용 담보 추가 특별약관
- 10)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
- 11)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특별약관
- 12) AIDS / HEPATITIS 부담보
- 13) 개원의 80명 이상 가입조건
- 14) 대진의 담보. 단, 다음에 한함
 - 운용기간 : 연중 30일(세미나, 학술대회, 휴가, 예비군훈련 등)
 - 대진의의 진료범위는 기존고객의 통상적인 의료행위 및 간단한 처방에 국한되며 고도의 처방을 요하는 진료는 보험 증권상의 피보험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대진의(당직의) 담보 : 운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진료의 경우, '초빙의/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가입 사항임.
 - 대진의 사용 전 사전 통보된 경우만 담보(서면 및 구두통보 시 추후 서면 보완)
- 15) "당직의"의 정의 : 기명피보험자인 개원의에 의해 일정기간 고용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 퇴근후 출근 전까지 환자접수 및 응급조치수준의 의료행위를 하는 레지던트이상의 의사면허를 득한 자를 말함.
단, 피보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가 행하는 당직의료행위는 보장에서 제외됨.
- 16)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 17) 복수의사 가입 시 할인

| 구분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이상 |
|-----|-----|-----|-----|-----|-----|-----|-----|-----|-------|
| 할인율 | 10%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5% |

연간 보상 총액은 사고 당 한도액의 2배수를 제한하되 2명 가입시는 1배수를 적용

18) 무사고 할인 / 사고할증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만 해당)

* 할증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전체 보험가입 년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구 분 | 할인 / 할증 |
|----|---|----------------|
| 할인 | 2년차 무사고 갱신시 (1년가입) | 기본보험료의 3% 할인 |
| 기본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OutStanding(사고접수)가 발생한 경우 | 기본보험료 |
| 할증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 1천만원 미만의 경우 | 기본보험료의 15% 할증 |
|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경우 | 기본보험료의 30% 할증 |
|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경우 | 기본보험료의 50% 할증 |
|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의 경우 | 기본보험료의 70% 할증 |
|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 기본보험료의 100% 할증 |
| |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 1억원 이상의 경우 | 기본보험료의 150% 할증 |

19) 손해분담 특별약관 : 피보험자 분담비율 10%

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주요 특별약관 요약

1)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또는 조정을 위해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 제공(경호원 1인 주간 8시간 기준 연 50일)

2)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고 환자의 유족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분쟁을 제기하여, 의료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건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3) 벌금담보 특별약관

의료행위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4) 형사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이하 "기소")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5)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6)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마취의사 포함)

▶ 보험가입 문의처 및 사고 접수처 ◀

보험가입 문의처

- ◆ 전지역 보험가입 문의 및 상담
- 한국단체보험연합(주) TEL. 02-717-9481 FAX. 0507-770-7374

보상 상담처

- ◆ 사고접수 및 상담 : 현대해상 손해사정팀
- 박정민 차장님 TEL: 02-3701-8381 FAX: 0507-770-2396